

학술분야소식

◆ 학술위원회 ◆

회 원 보 수 교 육 규 정

제정 : 1973. 12. 5.

개정 : 1983. 5. 11.

- 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의료법 제28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교육담당) 보수교육 기본방침 및 계획은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하고, 동 업무는 학술이사가 주관한다.
- 제 3 조(교육대상 및 수강시간) 보수교육의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 3 항 해당자를 제외한 전회원으로 하며, 수강시간은 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제 4 조(보고승인 신청) 학술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매년 다음년도에 실시할 보수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 5 조(교육내용) 보수교육 계획편성은 임상교육과 기초교육 및 교양과목을 병행하여야 한다.
- 제 6 조(교재 및 교육비)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가급적 교재를 교부하고, 교육을 위한 모든 경비는 피교육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7 조(결과보고 의무) 각 지부, 분과학회 및 보수교육 주관자는 매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해야 하며 협회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시 상황을 보건의사회부장관에게 보고 하하여야 한다.
- 제 8 조(강사수당 지급) 보수교육 주관자는 보수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강사의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 9 조(교육강사 자격) 보수교육의 강사자격은 다음 사항의 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(1)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.
- (2) 2년 이상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임 치과의사
- (3) 퇴임 조교수 이상의 자
- (4)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한 자

10조(세부실시 계획)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 계획과 방법등은 별도 지침서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보수교육과 관련한 의료법

의료법 제28조(협조의 의무) (1) 중앙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(2) 중앙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(3) 의료인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53조(자격정지등) (1) 보사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- 1.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때
- 2.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
- 3.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

의료시행령 제20조(자격정지) 법 제5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의 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.

의료시행규칙 제21조 2(보수교육) (1)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는 법 제2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하되 중앙회의장이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.

◎ 대구직할시 치과의사회

1983년도 제 3 차 보수교육실시

대구직할시 치과의사회(회장 박재훈)에서는 83년

제 3 차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약 100여

1원이 참석, 성황리에 끝마쳤다.

1날의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일 시 : 1983년 6 월 25일(토) 오전 8시~9시

장 소 : 대구 동인관광호텔 2층 회의실

강사 및 연제 : 조규증교수(경북대 치대 보존학)

Root Canal의 Step-back preparation.

교육연자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.

- 1) 골막하 Implant..... 김홍기박사(학회장)
- 2) 보철과 Implant..... 최부병교수(경희치대 부속병원장)

◎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집담회 개최

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(회장 金仁哲) 지난 7월 9일 대구 동인관광호텔 2층 회의실에서 회원및 대구, 경북회원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= 다 음 =

○일시 : 1983년 7 월 9 일(토) 오후 8 시~10시까지

○장소 : 대구 동인관광호텔 2층 회의실

○강사 및 연제 :

- 이선형(서울대 치대교수) Metal Bonded Porcelain Crown
- 최부병(경희대 치대교수) Adhesive Bridge

◎ 대한치과이식학회 제 1 회

보수교육실시

대한치과이식학회(회장 金鴻基)에서는 지난 6월

9일 명동 성모병원 2층 회의실에서 61명의 회원이

참석, 제 1 회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동 보수

◎ 대한구강보건학회 학술집담회 개최

대한구강보건학회(회장 崔有鎭)에서는 지난 7월 12일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회원과 비회원 치과의사 약 60여명이 참석 보수교육의 열기가 차차 가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
○ 개최일시 : 1983. 6. 29 6:30~8:30

○ 장 소 :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세미나실

○ 연 자 : 1. 최유진교수(경희대 치대)
2. 김종열교수, 정순민선생 (연세대 치대)

○ 연 제 : 1. 불화물 이용의 최근경향
2. 위생보조재료

◎ 대한치주과학회 학술집담회

大韓齒周學會(회장 李萬燮)는 지난 7월 15일 분기학술 집담회를 서울치대 세미나실에서 가졌다.

이날 집담회는

● 「진단목적으로서의 치주낭내 PO₂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」(서울齒大 韓秀夫교수),

● 「Chemical Curettage의 임상적 응용」(서울齒大 이수인선생),

● 「Alloxan 투여에 의한 당뇨병이 백서염증 치주 조직에 미치는 전자현미경적 연구」(서울齒大 이민구선생) 등 3개연제가 진행됐다.

◎ 대한치과교합학회(가칭) 인준 신청

가칭 대한치과교합학회(회장 김영수)에서는 지난 6월 25일자로 학회 인준 신청을 협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대치교합 : 83-5 1983. 6. 25

수 신 : 대한치과의사협회장

참 조 :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장

제 목 : 학회 인준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

1. 본회 공문(대치교합 83-2, 83. 1. 5)에서 학회인준에 관한 귀 협회의 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준신청 의사를 알려드린바 있었습니다.

그리하여 귀 협회로부터 공문(심시 32, 99-620, 83. 1. 14)을 수령하여 참고하고 검토하여 왔습니다.

2. 본 학회에서는 치과의학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치과교합학을 연구 육성함에 있어 모든 치과의사가 참여하여야 하겠다고 판단하여 범치과의사의 학

회로 발전시키는 데에 귀 협회의 협조가 요청되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하 학회로 인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는 바 이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회인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. 끝

대한치과교합학회 회장 김 영 수

◎ 83년도 회원보수교육 계획승인신청

치협에서는 지난 7월 14일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83년도 보수교육 계획안을 제출 그 승인을 요청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학 술 : 33, 23-118 1983. 7. 14

수 신 : 보건사회부장관

참 조 : 의료제도 과장

제 목 : 1983년도 회원 보수교육 계획 승인 신청

1. 귀부 의제 1421-7641호(1983. 5. 31), 본 협회 학술 33, 14-116호(1983. 6. 7) 및 귀부 의제 1421-8432호(1983. 6. 15)표제와 관련입니다.

2.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1 제 3 항에 의거 보수교육에 따른 세부사항을 본 협회 지침서로 마련하고, 1983년도 회원 보수교육 계획을 첨부와 같이 보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양망합니다.

첨 부 : 1) 1983년도 회원 보수교육 계획서 1부

2) 보수교육 지침서 1부

3) 보수교육 참가카드 1매 끝

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동 순

◎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건의

치협에서는 지난 7월 16일 공중보건의 보수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, 그 건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.

학 술 : 33, 24-192 1983. 7. 16

수 신 : 보건사회부장관

참 조 : 의정국장

제 목 :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면제 대상자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건의

1. 귀부 지의 1422-49434(1983. 6. 14)호와

관련입니다.

2. 동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 의사는 의료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한 의사보수교육 면제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주셨습니다.

3. 그러나 여기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

가. 공중보건 의사는 현재 각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나 각 보건소가 요양취급 기관으로 지정 받는 단계로서 환자진료를 하여야 하게 되어 있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

나. 공중보건 의사는 거의 99%가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당년에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경험이 희소한 의료인으로서 항상 연구하고 기술연마 하기에는 선배와의 유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수교육을 통하여 학술적 연구와 기술연마에 지도를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.

다. 또한 공중보건 의사는 각 지방오지에 근무하면서 동료 또는 선배와의 유대도 어려울뿐 아니라 진료상의 문제점이 있을시 이는 인근 의료인이나 그 지역 소속단체와 협의지도를 받아야 할 실정인바 동 지역의 사회와의 유대가 긴밀하여야 할 실정입니다.

라. 이러한 공중보건 의사를 연간 10시간 정도의 보수교육마저 면제하게 한다면 예를들어 망망대해에 있는 범선과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됩니다.

4. 본 협회가 공중보건 의사를 보수교육 대상으로 해주도록 건의하는 것은 그 지역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와의 유대를 갖고 아직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으로서 더 연구하고 경험을 얻도록 도움을 주고져 하는 것이오니 각별한 배려로서 재고하시어 선처있으시기 바랍니다.

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동 순

◎ 의료기사교육심의위원회 개최

치협학술위원회 (위원장 丁東均)에서는 지난 7월 19일 종로구 원남동 소재 『다원』에서 의료기사교육 심의위원회를 가진바 있는데 이날 토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.

- 1) 의료기사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분석
- 2) 기타사항

토막소식

◆ 치협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계몽포스터 전국회원에 배포

대한치과의사협회 정화추진위원회에서는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자세확립과 사회 명랑화를 기하는 뜻이 담긴 계몽포스터를 제작, 시도지부를 통하여 전국회원에게 일제히 배포했다. 동포스터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疾病退治 앞장서서 明朗社會 이룩하자
- 信賴받는 醫療施惠 받아오는 우리社會

◆ 서울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

조합원수 510명, 총자산 6억원

서울시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(이사장 鄭寬喜)은 지난 7월 6일 3/4분기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, 이 감사결과에 나타난 것을 미루워 보면 아래와 같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한바 있다.

一、 3/4분기 정기감사실시

때 : 1983. 7. 6 오후 6:30

곳 : 서울치과의사 실험 사무실

수석감사 : 이병태, 감사 : 장세웅, 변영남

一、 서울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현황

(1983. 6. 30일 현재)

조합원수 : 510명

총 자산 : 6억원

출자금 : 3억원

대부금 잔액 : 5억원

一、 지역사회 개발사업(공제사업)

Unit chart, Silver alloy, Instruments, 1회용 주사침, Alginate, X-Ray기, PANORAMA등.

一、 적금, 정기예탁, 자립예탁(저축예금)등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적금대부 : 1,000만원 한도

보통대부 : 400만원 한도

一、 노후, 은퇴후의 대책을 수립

잉여금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적립하여 활용